

서울대학교 경영대학 강사 임용에 관한 세부 지침

제정 2019.06.12.

개정 2020.04.09.

개정 2020.05.14.

개정 2021.02.1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세부지침은 「서울대학교 강사 임용 규정」(이하 “강사임용규정”이라 한다) 제 27조에 따라 경영대학 강사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0.04.09.>

제2조(적용범위) 이 세부지침은 강사임용규정 제2조의 강사에게 적용한다.

제3조(임용 등) ① 강사는 경영대학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학장이 총장에게 임용을 추천한다.
② 인사위원회는 신규채용 및 재임용 최종평가결과와 심사대상자의 제출서류를 바탕으로 추천여부를 심의하며, 강사임용규정에 따라 강사의 임용 등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을 정할 수 있다.
③ 강사는 최초임용기간을 포함하여 통산 3년까지 재임용 절차를 보장하며, 그 이후는 신규 채용 절차를 진행한다. <개정 2020.04.09., 2020.05.14.>

제2장 임용

제1절 신규채용

제4조(채용방법 및 신규채용절차) ① 신규채용 방법 및 절차는 강사임용규정 제9조 및 제10조를 따른다.
② 학장은 학문후속세대 양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학사학위 이상 소지자로서 교육 및 연구경력이 3년 이상 5년 이내인 박사학위 미소지자 또는 박사학위 취득 후 교육 및 연구경력이 3년 이내인 자로 지원자격을 제한하여 채용할 수 있다. <개정 2021.02.18.>
③ 공개채용을 실시하였으나 지원자가 없거나 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5일 이상의 공고기간을 정하여 공개채용을 다시 진행할 수 있다.
④ 강사임용규정 제9조에 따라 강사를 특별채용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동 규정 제10조에서 정한 절차 중 공고와 접수 등의 일부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제5조(제출서류) 신규채용후보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1. 공개채용지원서
2. 성적증명서, 졸업·학위증명서(대학 및 대학원)
3. 경력증명서
4. 총괄연구업적 목록
5. 자기소개서
6. 교육계획서

제6조(신규채용후보자 심사) ① 신규채용후보자에 대한 심사는 다음 각 호의 서류심사와 면접 심사의 두 단계로 구분하여 실시하되, 모집분야별 지원자가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일 경우 각 단계별 심사를 통합하여 실시할 수 있다.

1. 서류심사

- 가.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
- 나. 교육경력 및 총괄연구업적
- 다.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

2. 면접심사

- 가. 공개발표(국제화능력 포함)
- 나. 임용적합성

② 제1항 각 호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 및 구체적인 평가의 항목·비중·방법 등은 [별표 1]과 같으며,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강사 신규채용 심사표는 [별표 2] 및 [별표 3]과 같다. <개정 2020.04.09.>

③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은 지원자의 전공 또는 전문분야와 담당교과목 간의 일치 및 유사성에 따라 상(3점), 중(2점), 하(1점)로 평가하여 평균 2.0이상일 경우 적격으로 인정하고, 2.0미만일 때 부적격 처리하여 이후 심사를 진행하지 아니한다.

④ 교육경력, 총괄연구업적, 자기소개서, 교육계획서, 공개발표, 임용적합성은 교육경력 및 총괄연구업적 목록, 자기소개서, 교육계획서 등을 바탕으로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평가하여 배점에 따라 환산한다. <개정 2020.04.09.>

<중전 제6조제5항 및 제6항은 삭제 2020.04.09.>

⑤ 심사단계를 나누어 진행할 경우에는 서류심사 결과에 따라 분야별 모집인원의 3배수 이내에서 면접심사 대상자를 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서류심사 결과 취득점수가 서류심사 배정의 10분의 6 이하의 경우에는 그 이후의 심사를 진행하지 않는다. <개정 2020.04.09.>

제7조(심사위원) ① 제6조제1항의 심사를 위하여 학장은 학과장으로부터 담당 강의와 관련이 있는 전임교원이나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관련 외부전문가 중에서 5명 이상의 후보자를 추천 받아 3명 이상을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하며, 단계별 심사위원을 동일하게 구성할 수 있다.

② 박사학위논문 지도교수, 공동연구자 등 심사의 공정성을 유지하기 곤란한 사람은 심사위원으로 위촉 또는 임명될 수 없다. 다만,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다르게 정할 수 있다.

제8조(심사방법) ① 각 심사위원은 제6조에서 정한 항목 및 비중에 따라 평가하되, 심사위원이 4명 이하일 경우에는 평가한 점수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하며, 심사위원이 5명 이상일 경우에는 최고 및 최저 평가점수 각 1개를 제외한 나머지를 평균한 것을 취득점수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별표 1]의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출하며, 고득점자 순으로 채용후보자를 결정할 수 있다. 강사임용후보자로 적격하다고 인정되기 위해서는 총점 80점 이상을 획득하여야 하며, 만약 동점자가 발생할 경우 인사위원회에서 정한 기준에 의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제9조(심사결과 제출 및 채용후보자 추천) ① 학장은 심사 종료 후 심사대상자 전원에 대한 응모 및 심사 결과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04.09.>

② 학장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채용후보자를 결정하고, 채용후보자에 대하여 임용기간을 기재한 강사채용후보자 심사조서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③ 채용후보자가 임용예정일 이전에 임용을 포기할 경우 다음 순위자를 강사로 추천할 수 있다.

제2절 재임용

제10조(재임용 기준 및 절차) ① 재임용 기준 및 절차는 강사임용규정 제18조를 따른다.

② 학장은 임용기간이 만료되는 해당 강사에게 임용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까지 임용기간이 끝난다는 사실과 재임용심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0.04.09.>

③ 학장은 해당 강사가 제11조에 따라 정해진 재임용기준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해당 강사에게 의견 제출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이때 학장은 해당 강사에게 의견 등을 진술할 시간과 장소를 15일 전에 통지하고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는 방법과 절차에 따라 의견 진술 등 소명을 하도록 하며, 이를 재임용 심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④ 인사위원회는 재임용심사 결과 기준에 미치지 못한다고 판단되는 해당 강사에게 진술서를 구체적으로 작성·제출하게 하거나 회의에 참석하여 진술하게 하는 등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11조(재임용 심사) ① 강사의 재임용은 해당 임용기간 중의 업적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객관적인 사유에 근거하여 심사하여야 한다. 단, 강사가 임용기간 중 강의미개설로 인하여 강의를 담당하지 않은 기간은 위 재임용 심사 대상 기간에서 제외한다.

1. 교육활동평가(강의평가, 강좌운영, 그 밖에 교육활동 등) (80점)

2. 기관장평가(교육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강사로서의 품위, 대학(원) 기여도 등) (20점)

3. 그 밖에 수상, 서훈, 표창 등 해당 사항이 있을 경우 가산점 부여 가능(5점)

② 제1항 각 호를 심사하는데 필요한 세부적 절차 및 구체적인 평가의 항목·비중·방법 등은 [별표 4]와 같으며, 평가를 실시하기 위한 강사 재임용 심사표 및 평정 총괄표는 [별표 5] 및 [별표6]과 같다. <개정 2020.04.09.>

③ 강의평가는 임용기간 중 강의에 대한 수강생들의 평가결과의 평균값을 적용한다. 단, 강의평가를 실시하지 않는 과목, 팀 티칭 등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심사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강의 평가를 제외한 합계를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한다.

④ 전항 이외에 임용기간 동안 강의평가가 없는 경우에는 재임용심사 중 강의가 종료되기 이전에도 중간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⑤ 강좌운영,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 교육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강사로서의 품위, 대학(원) 기여도 등은 수, 우, 미, 양, 가 등급으로 평가하여 배점에 따라 환산한다.

⑥ 학장은 강사에게 재임용 평가에 필요한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개정 2020.04.09.>

⑦ 제1항에 따른 [별표 4]의 배점 및 평가기준에 따라 취득점수를 합산하여 종합평가점수를 산

출하며, 총점 70점 이상일 경우 해당 강사를 재임용 적격으로 인정한다. <개정 2020.04.09.>

⑧ 그 밖에 심사위원의 구성 및 심사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제7조 및 제8조 제1항을 따른다.
<개정 2020.04.09.>

제12조(재임용예정자 추천) 학장은 인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임용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강사의 재임용 여부를 결정하고, 그 심사 결과를 총장에게 제출한다. <개정 2020.04.09.>

제3장 보칙

제13조(그 밖의 사항) 강사의 임용 및 복무 등에 관해서 이 세부지침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학장이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따로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부 칙<2021.02.18.>

이 지침은 2021년 9월 1일 이후 신규채용 되는 강사(해당 강사를 신규채용하기 위한 절차 포함)부터 적용한다.

강사 신규채용 평가 항목 · 비중 · 방법

심사단계		서류심사					면접심사		총점
배점		60					40		100
항목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 적합성	교육경력	총괄업적	자기 소개서	교육계 획서	공개발표	임용 적합성		
심사 내용	적합성	모집대상 전공 (교과)분야의 강의경력 및 업적 등(경력연 수, 담당 강의 수, 담당 학기 포함)	모집대상 전공 (교과)분야 에 적합성, 지 속적인 연구 실적물 발표 및 연구실적 물의 수준, 학 문적 기여도 등	지원동기, 강 사로서의 적 성, 발전가 능성 및 역 량 등	모집대상 전공(교과) 분야에 대 한 교육목 표, 교육방 법의 우수 성 및 적합 성, 교육기 법 등	강의내용 및 방법의 우수 성, 국제화 능력 등	교육자 자 질, 성품 등		
세부 배점	적격여부 판단	20	10	10	20	20	20	100	
평정 방법		- 적합도에 따라 상중하(3,2,1) 척도로 평정 * 평균 2.0이상 : 적격 * 평균 2.0미만 : 부적격 (심사중단) - 항목별로 수-우-미-양-가(5,4,3,2,1) 척도로 평정 * 수(매우 우수) 우(우수) 미(보통) 양(부족) 가(매우 부족) * 배점 20점: 수-우-미-양-가(20-16-12-8-4) * 배점 10점: 수-우-미-양-가(10-8-6-4-2) ※ 서류심사 결과 취득점수가 서류심사 배정의 10분의 6(36점/60점) 이하의 경 우 심사 중단							
심사 위원	위원	전공 관련 심사위원 3인 이상 (내부 또는 외부위원 포함)							
	구성	학과장 추천, 학장 지명							
심사자료		교육경력 및 총괄연구업적목록 등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 등				80점 이상 적격

[별표 2] <개정 2020.04.09.>

강사 신규채용 서류 심사표

경영대학

심사대상자	학과(부)		성명	
	모집 전공(교과)분야			

☐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와의 적합성 (2점 이상 적격)

구분 평정영역	평가기준	배점	평정점	비고
모집대상 전공(교과) 분야의 적합성	상: 완전일치	3		
	중: 상당부분 일치하며 채용에 큰 무리가 없음	2		
	하: 부분적으로 근접하나 상당부분 불일치하며 채용에 무리가 있음	1		
	합 계	3점	점	(P/F)

☐ 교육경력 등 (36점 이하 심사중단)

구분 평정영역 (평가비중)	평가기준		배점	평정점	비고
교육경력 및 총괄연구업적 (30)	교육경력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의 강의경 력 및 업적 등(경력연수 담당 강의 수, 담당 학기 포함)	수(20)	20	
			우(16)		
			미(12)		
			양(8)		
			가(4)		
	*총괄연구업적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에 적합 성, 지속적인 연구실적물 발표 및 연구실적물의 수준, 학문적 기여도 등	수(10)	10	
			우(8)		
			미(6)		
			양(4)		
			가(2)		
	소 계			30점	점
자기소개서 및 교육계획서 (30)	자기소개서	지원동기, 강사로서의 적성, 발전가 능성 및 역량 등	수(10)	10	
			우(8)		
			미(6)		
			양(4)		
			가(2)		
	교육계획서	모집대상 전공(교과)분야에 대한 교 육 목표, 교육방법의 우수성 및 적 합성, 교육기법 등	수(20)	20	
			우(16)		
			미(12)		
			양(8)		
			가(4)		
	소 계			30점	점
합 계			60점	점	

*지원마감일이 속하는 월 기준 3년 이내 발간된 논문 등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전공) (직급) (성명) (인)

[별표 3] <개정 2020.04.09.>

강사 신규채용 면접 심사표

경영대학

심사대상자	학과(부)		성명	
	모집 전공(교과)분야			

구분	배점		평정점	평가내용	비고
공개발표 (강의내용 및 방법의 우수성, 국제화 능력 등)	수(20)	20		(평가 요지)	
	우(16)				
	미(12)				
	양(8)				
	가(4)				
임용적합성 (교육자 자질, 성품 등)	수(20)	20		(평가 요지)	
	우(16)				
	미(12)				
	양(8)				
	가(4)				
합 계	40점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전공) (직급) (성명) (인)

[별표 4] (제11조제2항 관련)

강사 재임용 평가 항목 · 비중 · 방법

분야		교육활동			기관장평가			총점
배점		80			20			100
심사 항목	강의평가	강좌운영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	교육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준수, 강사로서의 품위, 대학(원)등에의 기여도 등				
심사 내용	강의평점	강의계획서에 따른 실행, 강의내용 및 방법의 적합 성·우수성, 교육자료 개 발 및 활용, 강의관련 학 생 지도 및 상담실적 등	전공(교과)분야와 관련한 전문성 강화 노력으로서 교수법 개발 및 개선 실적, 관련 학회 활동 실적, 교육 과정 및 교육 관련 연구 실적 등	교육 관계 법령 및 규 정 의 준수	강 사 로 서 의 품 위	대 학 (원) 등 에 의 기 여 도		
세부배점	30	30	20	10	5	5	100	
평정 방법	-5점 만점 인 과목별 강의평가 점수를 30 점 으 로 환산함 * 과목별, 학기별 점수를 평균하여 산출	- 항목별로 수-우-미-양-가(5,4,3,2,1) 척도로 평정 * 수(매우 우수) 우(우수) 미(보통) 양(부족) 가(매우 부족) * 배점 30점: 수-우-미-양-가(30-24-18-12-6) * 배점 20점: 수-우-미-양-가(20-16-12-8-4) * 배점 10점: 수-우-미-양-가(10-8-6-4-2) * 배점 5점: 수-우-미-양-가(5-4-3-2-1)						가산점 (5점) - 수상, 서 훈 , 표창 등 이 있을 경우
심사방법		서류심사						
심사 위원	위원	전공 관련 심사위원 3인 이상(내부 또는 외부위원 포함)						
	구성	학과장 추천, 학장 지명						
심사 자료	평가	학사행정 강의평가 자료	학사행정의 수업자료	제출자료, 학사행정의 수업자료	감사나 수사자료, 동료 평판, 언론기사 등			70점 이상

[별표 5]

강사 재임용 교육활동평가 심사표

경영대학

심사대상자	학과(부)		성명	
	모집 전공(교과)분야			

구분 평정영역 (평가비중)	평가기준	평 가				
		수	우	미	양	가
강좌운영 (30점)	강의계획서에 따른 강의 실행 여부, 강의내용 및 방법의 적합성·우수성, 교육자료 개발 및 활용, 강의 관련 학생 지도 및 상담 실적 등	30	24	18	12	6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 (20점)	전공(교과)분야와 관련한 전문성 강화 노력으로서 교수법 개발 및 개선 실적, 관련 학회 활동 실적, 교육과정 및 교육 관련 연구 실적 등	20	16	12	8	4
합 계 (총 50점)		점				

년 월 일

심사위원: (소속)

(전공)

(직급)

(성명)

(인)

[별표 6]

강사 재임용 평정 총괄표

경영대학

심사대상자	학과(부)		성명		
	전공(교과)분야				
구분 평정영역 (평가비중)	평가기준		배점	평정점	비고
교육활동평가 (80)	강의평점*		30		
	강좌운영		30		
	그 밖에 교육과 관련된 활동		20		
	소 계		80점		
기관장 평가 (20)	교육 관계 법령 및 규정의 준수		10		
	강사로서의 품위		5		
	대학(원)등에의 기여도		5		
	소 계		20점		
가산점 (5)	평가 대상 기간 중 담당 전공(교과)분야와 관련한 수상, 서훈, 표창 등		5		
	소 계		5점		
합 계			105점		

종합의견	
------	--

* 강의평가 미 실시 경우: 총점 70점을 만점으로 하여 100점 만점 기준으로 환산함.

2000년 월 일

경영학과장 성명 (인)
 서울대학교 경영대학장 성명 (인)